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10.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523호)	김선교의원	2026.6.26.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08.3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574호)	김선교의원	2026.6.29.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08.3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16.)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하도록 하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와 관련한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준용하도록 하고, 동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92조, 제95조, 제112조, 제177조의2).

법률 제 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은 "공제"로, "보험계약자"는 "공제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공제자"로, "보험금"은 "공제금"으로, "보험회사"는 "중앙회"로 본다.

제9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제9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자감소"를 "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로 한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

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 다만,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은 “공제”로, “보험계약자”는 “공제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공제자”로, “보험

	금”은 “공제금”으로, “보험회사”는 “중앙회”로 본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2조(설립등기) ① (생 략)	제92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2.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5조(변경등기) ① (생 략)	제95조(변경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조합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출자감소·합병 또는 분할	⑤ 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

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제177조의2(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